

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3. 2. 8.(금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김충식 부위원장
홍성규 상임위원
김대희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의결 가 ~ 의결 다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09-30차 전원회의('09.7.9), 제2011-17차 전원회의('11.3.21)에서 의결한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'에 해당됨
- 보고 가 ~ 보고 나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1(서면보고) 제1항에 따른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'의 안건에 해당됨

② 의결사항

가.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3-07(서)-017)

-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라 민원사무의 처리절차도 변경 등 단순 서식 변경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- 주요 내용
 - ① 공사업의 등록신청, 등록기준 신고, 양도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 등의 접수업무 민간기관 위탁(접수 : 시·도→정보통신공사협회)에 따른 처리절차도 등 단순 서식 변경
 - ② 민원인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사항 추가
- 향후일정
 - '13. 2. 18. : 관보게재 및 시행(예정)

나. 「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」(고시)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3-07(서)-018)

- 신규 서비스(M2M 등)의 번호부여 근거 마련, 특수번호의 공익성 강화 등 번호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- 주요 내용
 - ① '012'번호를 M2M(사물지능통신) 용도로 부여
 - 전국 무선호출사업자 폐업(리얼텔레콤, '11.3.2)으로 회수된 012번호를 M2M 용도로 부여(제8조 제2항 개정)
 - .기계는 전화번호 인식의 한계가 없으므로 국번호를 기존 4자리에서 6자리로 확장(제6조 제1항 개정)
 - ② 번호 희소성이 높은 10Y 특수번호의 공익성 강화
 - 특수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'통신망 유지보수' 용도를 삭제하고 '공공기관의 공익성이 현저히 인정되는 업무'로 용도 변경(제11조 제1항 개정)
- 위원회 보고 후 변경사항
 - 전기통신사업자의 번호사용 현황자료 제출 횟수를 '연 1회'에서 '연 2회'로 개정한 안 제21조에 대하여

·전기통신사업자는 번호부여 신청 또는 위원회 요청에 따라 번호현황을 수시 제출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, 현행과 같이 '연 1회' 제출로 유지하라는 규제위 예비심사 권고의견 수용

○ 향후 일정

- 관보 게재 및 시행 : 2013. 2월중

다.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- Universal Communications Network

- (2013-07(서)-019)

- 「방송법」 제78조의2제1항 및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21조제4항에 따라 Universal Communications Network(채널명 : NTD TV)의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정치적 목적과 종교적 배경을 가진 방송에 대해 승인을 지양하기로 한 세부심사기준(방통위 의결, '08.5.30) 등에 따라 재송신 승인을 거부하기로 의결함

③ 보고사항

가. 「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제16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업진단 관련 사항과 그 밖에 현행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 내용

- ① 「세무사법」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및 세무법인도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

※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등의 개정('12.1.17)으로 건설업, 문화재수리업,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자 범위에 세무사가 추가됨에 따라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자 범위에 세무사를 추가

- ② 기업진단 시 유가증권 평가와 총부채 평가에서 중복 차감되는 '출자금 담보 대부금액'을 유가증권 평가부분에서 삭제

○ 추진 일정

- 2013. 2월 : 입법예고

- 2013. 3월 : 규제심사 및 의결(결재)

- 2013. 4월 : 관보게시 및 시행

나. 「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」 제정에 관한 사항

○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해당 사업자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 내용

-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 (MVNO)를 영업상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·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고시

·다만, 경과규정을 두어, 이 고시 시행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

○ 향후 일정(안)

- 관계부처 협의, 행정예고, 규제심사 : '13. 2월

- 위원회 의결 : '13. 4월